

## 통보

본 통보문은 10.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

1. **통보국가: 칠레**

해당되는 경우,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제 3.2 조 및 제 7.2 조):

2. **담당기관:**

에너지부

Avenida Bernardo O'Higgins 1449, piso 13 edificio Edificio Santiago Downtown II. +56 2 2365 6800  
[contactoweb@minenergia.cl](mailto:contactoweb@minenergia.cl)

통보에 관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이 위와 다른 경우, 해당 기관의 이름 및 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및 가능한 경우 웹사이트 주소 포함)를 명시해야 한다:

국제경제관계사무국 – 칠레 외교부

3. **근거 조항 제 2.9.2 조 [X], 제 2.10.1 조 [ ], 제 5.6.2 조 [ ], 제 5.7.1 조 [ ], 제 3.2 조 [ ], 제 7.2 조 [ ], 기타:**

4. **해당 제품(해당되는 경우 HS 또는 CCCN, 이와 다른 경우 국가 관세 분류 번호.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경차 및 중형차

5. **통보된 문서의 제목, 페이지 수 및 언어:** 경차 및 중형차에 대한 에너지 소비 라벨링 규정을 승인한 2012년 에너지부 최고령 제 61호 개정 (4페이지, 스페인어)

6. **내용:** 성능 및 CO<sub>2</sub> 배출량 측정에 사용되는 새로운 시험 주기, 즉 WLTP에 맞게 조정할 목적으로 NDEC 시험 주기를 고려하는 차량 에너지 효율 라벨에 포함시켜야 하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2012년 에너지부 최고령 제 61호의 제 4조 제 1항 제 e)호 및 제 5조를 개정한다.

7. **목적 및 근거(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 DS 제 61/2012호의 목적은 국민에게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새 경차 또는 중형차를 구매할 때 해당 차량의 에너지 소비 및 CO<sub>2</sub> 배출 수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 주기를 NEDC에서 WLTP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안된 개정안은 2025년 10월 1일에 발효될 환경 규정을 준수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개정안 처리의 긴급성을 정당화한다; 소비자 정보 제공, 라벨링, 환경 보호

**8. 관련 문서:**

2012년 에너지부 최고령 제 61 호  
2020년 환경부 최고령 제 40 호  
2020년 환경부 최고령 제 41 호  
2023년 환경부 최고령 제 140 호  
2024년 환경부 최고령 제 45 호

**9. 채택 예정일:** 2025-09-30

시행 예정일: 관보 고시일 이후

**10. 의견 마감일:** 2025-03-03

**11. 관련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국가 질의처 [ ]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

주소: Teatinos 180, piso 11  
전화: (+56)-2- 2827 5251  
이메일: [tbt\\_chile@subrei.gob.cl](mailto:tbt_chile@subrei.gob.cl)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CHL/25\\_01323\\_00\\_s.pdf](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CHL/25_01323_00_s.pdf)